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한 형량 상향〉
■ 조정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3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정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7. 3.
3. 회 부 일: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 발생비율은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4.4건에서 2022년 63.2건으로 지난 10년간 발생비가 83.7%나 증가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소년 범죄사건을 분석해 보면 범행의 목적이나 수법이 성년 범죄자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인하므로 소년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종전 “15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2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가중하

는 경우 50년 이하)”로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소년범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의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의 최대 형량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여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게 처벌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 59조 및 제60조제1항).

Ⅲ. 검토의견

□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함) 제4조¹⁾는 살인·강간 등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이하 “특정강력범죄”라 함)²⁾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³⁾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는 「소년법」 제59조⁴⁾에도 불구하고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제1항),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⁵⁾에도 불구하고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3)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4)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5)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제2항) 「소년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선고형의 상한도 현행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안 제4조).⁶⁾

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6) 한편,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소년법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338호,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현행 소년법	개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제2201338호)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u>15년의 유기징역</u> 으로 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 ----- <u>20년의 유기징역</u> -----.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u>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u>	제60조(부정기형) ① ----- ----- ----- <u>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u>20년의 유기징역</u> 으로 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 ----- ----- ----- <u>30년의</u> <u>유기징역</u> -----.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u>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u>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 ----- <u>장기는</u> <u>20년, 단기는 10년</u> ----- -----.

<소년법 형량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구분	소년법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15년의 유기징역	20년의 유기징역	3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을 선고 할 때	장기 10년 ↓ 단기 5년 ↓	장기 15년 ↓ 단기 7년 ↓	장기 20년 ↓ 단기 10년 ↓

□ 최근 살인·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과 맞지 않고,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⁷⁾되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형량을 강화하여 소년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소년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하여 사회를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종전 “15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2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50년 이하)”로 변경⁸⁾되었으나, 특정강력범죄범상 소년범의 가중처벌 시 유기징역의 상한 등은 1990년에 제정된 이

7)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보도자료) 참조, 2022. 10. 26.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소년 마약사범도 '17년 68명 ⇨ '21년 271명으로 급증) -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년 36.3% ⇨ '20년 86.2%로 급증”].

8)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참고로, 2010. 4. 5. 개정 시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음.

형법 [시행 2005.7.29] [법률 제7623호, 2005.7.29, 일부개정]	형법 [시행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0년 「형법」 개정을 감안한 소년법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 다만,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에서 소년범을 사형·무기형에 처하지 않고 이를 완화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한정적 책임능력 및 성인보다 높은 개선·갱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사회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므로, 소년법에 대한 유기징역의 상한과 부정기형의 장·단기 상한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부정기형은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갱생 진도에 따르게 함으로써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로써, 소년의 경우 교육

9) 일본도 2004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가중하는 경우 20년)에서 20년(가중하는 경우 30년)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14년에 소년법의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을 종래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정기형도 종래의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장기 15년 단기 10년으로 변경함.

「일본 형법」

제12조(징역) ① 징역은 무기 및 유기로 하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제14조 (유기징역 및 금고의 가감의 한도) ② 유기징역 또는 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 까지 늘릴 수 있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일본 소년법」

제51조(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무기형을 부과한다.

②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무기형을 선고할 때라도 유기징역 또는 금고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형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를 선고한다.

제52조(부정기형) ① 소년에 대해 유기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長期)를 정하고, 장기의 2분의1(장기가 10년 이하인 때에는 그 기간에서 5년을 뺀 기간. 제2항에서 같다) 이하의 범위에서 단기(短期)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 경우에 장기는 15년, 단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의한 개선·갱생이 보다 많이 기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형을 부정기형으로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인바,¹⁰⁾ 부정기형 단기의 지나친 상향은 부정기형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¹¹⁾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이 정한 소년범에 대한 형량 상한인 20년의 유기징역과 부정기형에 대해 정한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미성숙도, 개선·갱생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보급판), 2014, 371면은, “소년은 인격 발달 과정에 있고 가변성이 풍부하여 교육에 의한 개선·갱생이 보다 많이 기대되므로 교육적 배려의 차원에서 성인에 비하여 가석방을 완화함과 동시에 소년에 대한 자유형(실형)은 원칙적으로 부정기형으로 하여 형기에 폭을 인정함으로써 처우에 탄력성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부정기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음.

11) 한편, 현행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양형조사의 미비,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양형으로 인한 소년의 법적 지위 불안, 정기형과 차별성 없는 형의 집행, 조기 석방의 부재 등의 문제가 상당함을 이유로, 판결 전 조사의 의무화,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의 통제, 단기 도달시 가석방 원칙의 명문화 등 전면적인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27호, 2021·가을)].